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22
----------	-------

발의연월일 : 2026. 10. 1.

발 의 자 : 전용기 · 윤준병 · 송옥주
윤종균 · 김준환 · 박홍배
이용선 · 장종태 · 손명수
김준혁 · 염태영 · 차지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소비의 증가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도심 부지의 높은 지가, 각종 입지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신규 공급이 정체되고 외곽화가 지속되는 한편, 택배기사와 간선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가 증가하면서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최근 대통령께서도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와 부지 부족으로 물류창고가 외곽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신 바 있으나, 이 또한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임.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그 방법이 생활물류 수요가 늘어나는 개발사

업이 시행되는 경우 해당 내용이 지역물류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거나 국가와 지자체 상호 간의 협조 요청 등에 그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영 버스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용지의 공간재구조화 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의 유발을 고려한 복합화, 입체개발을 추진하고, 여기에 생활물류시설 우선 설치 및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의 우선 입주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를 촉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지역이 직접 생활물류시설을 공급하여 수익자 부담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택배기사와 간선 차량기사 등 물류 노동자들의 이동거리를 감소시켜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자 함(제31조의2 신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토지 및 시설 중 유휴부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자산을 활용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관할 구역의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복합화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생활물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8호다목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입주를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지를 우선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1조의2(민관 협력을 통한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 ①</u>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물류시설 확보의 촉진을 위해 국</u> <u>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u> <u>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u> <u>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u> <u>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u> <u>지방공단</u>이 소유 및 관리하고 <u>있는 토지 및 시설 중 유휴부</u> <u>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u> <u>공자산을 활용하여 생활물류시</u> <u>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u> <u>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u> <u>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관계</u> <u>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u> <u>서비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u> <u>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해</u> <u>당 토지 또는 시설을 우선적으</u> <u>로 임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u> <u>수 있다.</u> <u>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u>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관할 구역의 생활물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하여 생활물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를 복합화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등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입체복합개발 등을 추진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건폐율 및 용
적률의 완화 등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택배서비
스사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인증사업자가 생활물류
시설 설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8호다목의 도시첨단산
업단지의 입주를 요청하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지를 우선하여 분
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